

2017년 제1회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

- 일 시: 2017. 2.15.(수), 14:30~16:00
- 장 소: 영상회의실
- 참 석: 총 25명 중 18명 참석

총 3 건 (원안 수용 1, 조건부 수용 1, 보류 1)

안건 번호	안 건 명	주요내용 및 개최결과	비 고
1	<p><도시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월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※2016년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류 안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: 중구 북성동 1가 98-53번지 일원(347,243.3㎡)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62,809.4㎡→347,243.3㎡ (증 84,433.9㎡) -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: 1개소(보행자전용도로) 신설, 기종점 오기사항 정정(경미한 변경) · 주차장: 1개소 신설 및 2개소 면적 변경 · 완충녹지: 1개소 면적변경, 공공공지: 1개소 신설 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구: 2개소(갑문친수공간, 이민사박물관 부지) 신설 · 획지: 공동개발을 제외한 단독필지 획지 계획수립 · 공동개발계획 변경 · C2, C3, C4 2단계 특별계획구역 계획 삭제 및 가구단위 공동개발계획 수립 - 건축물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구단위공동개발: C2, C3, C4(주거복합 용도계획 유지) · 용적률: 350%→기준 350%, 허용 600%, 상한 800% · 높이계획: 7층 이하, 8층 이하, 9층 이하 → GL+22m~50m 이하(블록별 차등 적용) - 기타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한계선 조정: 최대 4m로 폭원 확장 · 인센티브 항목 신설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추가 - 특별계획구역 신설(2개소) ※ 조건부 수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미 문화의 거리 위요감 저감 방안으로 경관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권장사항으로 명기하기 바람, - 추후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시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기 바람 	<p><재심의> 지구단위계획팀</p>
2	<p><도시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: 계양구 용종동 220-1번지(222.2㎡)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시설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공원 폐지 ※ 원안 수용 	<p><신 규> 지구단위계획팀</p>

안건 번호	안 건 명	주요내용 및 개최결과	비 고
3	<p><도시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갈산, 부평, 굴포천~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</p>	<p>○ 위치: 부평구 갈산동, 부평동, 부개동, 청천동 일원(1,175,571.4㎡) ○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: 659,734.4㎡ → 546,484.4㎡ (감 113,250㎡) · 감소 면적의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, 가구 및 획지계획 등 신설 구역 포함 - 부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: 346,034.2㎡ → 99,125㎡ (감 246,909.2㎡) · 감소 면적의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, 가구 및 획지계획 등 신설 구역 포함 - 굴포천역~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: 529,962㎡ · 용도지역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· 도시계획시설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도로, 광장, 완충녹지, 어린이공원, 공공공지 ·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최소대지규모, 공동개발(지정, 권장), 자율적 공동개발 · 건축물 용도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허용, 권장(전층, 1층), 불허(전층, 1층) · 용적률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기준·허용·상한(용도지역 변경과 변경 없는 경우 구분) · 높이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제1종일반주거지역(3층 이하 → 4층 이하), 제2종·제3종일반주거·준주거지역(24m 이하) · 건축한계선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간선도로변 5m, 주요 가로변 3m, 기타 가로변 2m, 이면부 1m · 특별계획구역 신설: ①, ②, ③(세림병원 일대) · 인센티브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용적률 완화, 높이 완화, 건폐율 완화 · 경미한 변경 사항 <p>※ 보류: 분과위원회 회부(비수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- 분과위원회 구성(총 7명) 	<p><신 규> 지구단위계획팀</p>